2016년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평가 및 지원 계획

작은도서관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하여 운영 세부영역을 현장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 차등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정적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제32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014.7.3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사업명	사비보조율	비고	사업명	사비보조율	비고
77. 공·사립문고 육성지원	정액	2백만원/개소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14년까지 1관당 200만원 정액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도서관 운영 실적을 고려한 차등지원하여 지원효과를 증대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모

Ⅱ 추진방향

○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 자치구별 합동평가반 주도하에 20개 세부영역, 32개 세부지표에 의거,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함으로써 공정성 담보와 지원효과 극대화
- 지역생활권에서 소규모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

○ 등급별 차등지원

-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액 차등화하고, 등급별 최소·최대 비율 범위 확정하여 차등지원 의미 퇴색하지 않도록 추진
- 보다 열정적으로 주민과 밀착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차등지원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계의 운영활성화 유도

(단위:천원)

등 급	지원금액	등급별 지원관수 비율
A	2,500	20~40%
B	2,000	40~60%
C	1,500	20~40%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 및 자치구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889관중에서 380여관

○ 선정방법 : 자치구별 현장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운영실적이 좋은 도서관 선정

○ 지원내용 : 1관당 150만원~250만원 차등지원 (자료구입비, 운영비)

○ 사업예산 : 760백만원

- 예산과목 : 마을권 독서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육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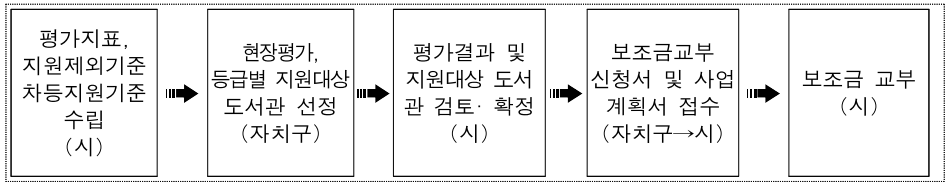

Ⅳ 세부사업내용

1. 지원 도서관 선정

○ **선정주체 : 관할 자치구**

- 평가지표 및 배점, 지원제외 기준, 차등지원 등급별 비율은 **서울시에서 수립**, 현장평가와 등급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선정은 **자치구에서 추진**

○ **선정방향**

- 자치구별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 현장실사에 근거한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순위에 따라 등급별 지원관수 비율에 맞게 등급별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 선정된 도서관은 해당 등급의 금액으로 지원
- 가능한 1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을 선정하되,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사립 도서관 지원관수 비율은 전체 지원관수 중 6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선정에서 제외(붙임 2 참조)

※ 등급별 지원관수 등은 붙임4의 '도서관별 운영평가 결과'의 '등급별 지원관수' 1안~3안 예시 참조

【사립 60% 이상 선정 및 고득점 순위순 선정 예외】

- 평가결과 지원가능한 사립도서관 수가 부족할 경우
- 2016년 마을기업, 2016년 주민참여사업 등의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 ※ 지원금이 아니고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아님
  - ※ 지원금이라도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붙임 2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할 경우

⇨ 이상과 같은 사유일 경우 사립 도서관 지원비율(60%) 조정가능, 차순위 도서관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배정

○ **지원금액 : 특정 자치구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금액 배정**

- 2016.1.1 기준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수 대비 자치구 작은도서관수에 비례하여 자치구별 지원금액 확정(1관 평균 200만원으로 산정)

※ 자치구별 지원금액 내에서 등급별 도서관 수 결정하고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중구는 사립관수가 적기 때문에, 사립 비율, 등급별 비율 자체 조정)

【2016년 자치구별 지원금액】

연번	자치구	작은도서관 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계	공립	사립	예상 지원관수 (380관)	지원금액 (760,000)
합 계		889 (100%)	417 (47%)	472 (53%)		
1	종로	25	15	10	11	22,000
2	중구	15	12	3	6	12,000
3	용산	23	11	12	10	20,000
4	성동	23	15	8	10	20,000
5	광진	29	15	14	12	24,000
6	동대문	26	13	13	11	22,000
7	중랑	38	17	21	16	32,000
8	성북	50	16	34	21	42,000
9	강북	40	12	28	17	34,000
10	도봉	29	14	15	12	24,000
11	노원	34	22	12	15	30,000
12	은평	76	17	59	32	64,000
13	서대문	24	11	13	10	20,000
14	마포	31	15	16	13	26,000
15	양천	41	16	25	18	36,000
16	강서	48	23	25	21	42,000
17	구로	57	14	43	24	48,000
18	금천	17	10	7	7	14,000
19	영등포	37	20	17	16	32,000
20	동작	37	18	19	16	32,000
21	관악	46	33	13	20	40,000
22	서초	39	20	19	17	34,000
23	강남	20	13	7	9	18,000
24	송파	52	24	28	22	44,000
25	강동	32	21	11	14	28,000

3. 도서관 평가

○ **평가대상 : 서울시내 공립 및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 **평가방법**

-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현장실사에 의거하여 평가
- 현장평가반 편성 : 자치구청 도서관 관련 부서 주관으로 자체 합동 현장평가반 편성 후 평가 실시
  - ▸자치구 담당자,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공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 공공도서관 관계자와 연계한 합동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반 2인 이상 구성)
  - ▸ 붙임 1의 운영평가표에 의거하여 현장평가하고 평가표에 반드시 자치구 담당자, 합동 현장평가자, 평가대상 도서관 운영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합동 현장평가 미이행시 재평가 실시)
- 자치구에서는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실사 전에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 규정, 운영위원 명단, 프로그램 진행표, 소장도서 현황, 대출현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도서관에 일정 공지

○ **도서관 운영평가표**

- 작은도서관 주요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도서관의 기본 목적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을 세부지표화하여 평가표 작성
- 7개 영역, 20개 세부영역, 32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지표 설정

※ 평가지표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문회의 및 자치구별 의견 수렴하여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선 완료 ('13.1)

○ 5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추가 및 보완

- 기존 : 사립도서관에 한하여 대출권수, 운영일수, 개관시간 등 5개 항목 20개 세부항목 평가
- 개선 :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목적의 적합성 및 제정, 서비스 등 20개 항목 32개 세부항목 평가

※ 평가방식 및 평가방법 비교

구분	기 존	개 선
평가대상	사립 작은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평가방법	- 기본, 이용편의, 보편성, 운영능력, 우수운영 5개 항목 - 세부영역: 면적, 장서수, 좌석수, 운영일수, 개관시간 등 20개 항목	- 계획, 설립목적의 적합성, 재정자립도, 연간 대출권수, 이용자수 등 20개항목 - 세부영역: 연간운영계획수립, 자료구입비, 연간대출권수, 이용자만족도 등 32개 항목

【운영평가표 구성항목 및 배점】

영역	세부영역	세부항목	배점
목적의 적합성 및 재정 (40)	운영계획 (8)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5
		연간 운영계획	3
	설립목적 적합성 (6)	작은도서관 설립취지 적합성	6
	각종 규정 명문화 (6)	도서관 규정 등	6
	예산 규모 적절성(15)	자료구입비	5
		인건비	5
		운영비	5
	재정자립도 (5)	기관 자부담 여부(후원 포함)	5
서비스 (60)	연간 대출권수 및 이용자수 (15)	연간대출권수	8
		이용자수	7
	개관일 및 시간 (15)	개관일수	8
		개관시간	7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25)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횟수	10
		독서문화프로그램 행사수	5
		독서문화프로그램 연간 총 참여인원수	10
	만족도 조사 (5)	이용자 만족도 조사	5
장서관리 (20)	연간장서 증가량 (8)	장서증가량	8
	장서수 (12)	장서량	8
		연속간행물	4
시설 (10)	공간 적정 규모 (4)	공간면적	4
	전산기기 (6)	관리프로그램 사용여부	3
		이용자용 컴퓨터 보유대수	3
인력자원 (30)	인력 및 전문성 (15)	전담인력	10
		전담인력 전문성	5
	자원봉사자 (8)	상시 자원봉사자	8
	전문교육 참여 (7)	교육 참여 횟수	7
홍보 및 교류 (40)	홍보 (10)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운영	10
	도서관 교류협력 (10)	다른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여부	10
	지역사회 문화교육 교류협력 (20)	운영실적	10
		동아리개수	10
추가 (10)	우수운영 (10)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유무	3
		도서관 알리미 활동 자료	7
총 점			210

4. 평가 결과 자료 제출

○ **운영평가표 제출**

- 도서관별 운영평가표 스캔파일로 제출(붙임 1 양식)
- 한 개의 파일로 제출(도서관별 파일 불가, 붙임3, 붙임4의 순번대로 편집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평가순위 및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 제출**

- 운영평가표 근거로 선정방향에 맞게 지원대상 선정하고 붙임3, 4 양식으로 제출
- 고득점 평가 도서관 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동점시는 자치구 판단하에 제출
  - ▸ 도서관별 운영평가 내역 제출 (붙임 3 양식)
    - · '붙임 1 운영평가표' 도서관별 점수를 '붙임 3 운영평가 내역'에 입력
    - · 고득점순으로 작성
    - · 평가거부 도서관도 도서관 현황까지는 기재하고 비고란에 평가거부 등 기재
  - ▸ 도서관별 운영평가 결과 제출 (붙임 4 양식)
    - · '붙임 3 운영평가내역' 순번대로 작성
    - · 왼쪽 '운영평가 결과표'와 오른쪽 '공·사립별 등급별, 지원관수'를 입력
    - ※ 붙임4 '도서관별 운영평가 결과'의 등급별 지원관수 1안~3안 예시 참조

5. 지원대상 도서관 검토 및 확정

- 자치구에서 제출한 운영평가표, 운영결과 내역,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을 검토 후 지원대상 도서관 확정하고 추진일정에 맞추어 **5월초 지원**

Ⅴ 추진일정

○ **'16. 2.12(금)~3.14(월) : 공·사립 작은도서관 현장평가와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자치구)**

○ **'16. 3.15(화)~3.31(목) : 지원 대상 도서관 검토와 확정(시)**

○ **'16. 4.1(금)~4.15(금) :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작은도서관→자치구→시)**

○ **'16. 4.18(월)~4.29(금) : 사업계획서 검토 (시)**

○ **'16. 5.2(월)~5.6(금)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작은도서관→자치구→시)**

○ **'16. 5.10(화) : 시비 보조금 교부 통지**

[붙임 1]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평가표(00구)

도서관명 : (공립/사립) 공립 ☆☆☆ 도서관

◆ 비고를 참고하여 평가하고, 실제 운영평가표상에는 기입력 내용 삭제 후, 도서관 상황에 맞게 작성

영역	세부영역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수	비고
목적의적합성 및 재정 (40)	계획 (8)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5)	지역주민 포함되어 구성	5		-위원회 관련 규정 -위원회 회원 명단 등 확인
			도서관 직원으로 구성	3		
			없음	0		
		연간 운영계획 (3)	운영계획 수립	3		-운영계획서 확인 -공공도서관 또는 자치구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가능(도서관명 명시되어 있을 것)
			운영계획 미수립	0		
	설립목적 적합성 (6)	작은도서관 설립취지 적합성 (6)	도서 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에 모든 지역주민 참여 가능	6		이용안내, 이용규정 등 확인
			특정종교 또는 특정 이용자만 이용	0		
	각종규정 명문화 (6)	각종 도서관 규정 등 (6)	문서화된 도서관 규정 있음	6		도서관 규정, 업무지침, 운영 매뉴얼 등 해당
			문서화된 도서관 규정 없음	0		
	예산 규모의 적절성 (15)	자료구입비 (5)	연 300만원 이상	5		-2015년 집행액, (자부담, 시비 및 구비 지원금, 후원금 등 포함) -구입 영수증 또는 서류 등 확인
			연 100만원 ~ 300만원 미만	3		
			연 100만원 미만	1		
			없음	0		
		인건비 (5)	연 1,000만원 이상	5		-2015년 집행액, (자부담, 구비 지원금, 후원금 등 포함) -인건비 지출내역 등 확인
			연 500 ~ 1,000만원 미만	2		
			연 500만원 미만	1		
			없음	0		
		운영비 (5)	연 500만원 이상	5		-2015년 집행액, (자부담, 시비 및 구비 지원금, 후원금 등 포함) -구입 영수증 또는 서류 등 확인
			연 200 ~ 500만원 미만	3		
			연 200만원 미만	1		
			없음	0		
	재정 자립도 (5)	기관 자부담 여부 (후원금 포함) (5) **-공립은 해당사항 없음 (체크 하지 말것)**	80% 이상	5		-2015년 총집행액 기준 (총집행액:자부담+후원금+시비, 구비 등의 지원금으로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합계) -자부담율 : (자부담+후원금)/총집행액*100
			50% ~ 80% 미만	3		
			50% 미만	1		
			없음	0		
서비스 (60)	대출권수 및 이용자수 (15)	대출 권수 (8)	일평균 40권 이상	8		-2015년 일평균 대출권수 -수기대출자료,도서관리시스템 통계자료 확인 -연간 대출권수 / 연간개관일수
			일평균 20 ~ 40권 미만	5		
			일평균 1 ~ 20권 미만	3		
			대출 제한	0		
		이용자수 (7)	연 5,000명 이상	7		-2015년 연간 이용자수 -대출자, 도서관 행사 참여자 관내 열람자 등 도서관
			연 4,000명~ 5,000명 미만	5		
			연 2,000명~ 4,000명 미만	3		이용자만 해당
			연 1,000명~ 2,000명 미만	2		
			연 1,000명 미만	1		
	개관일 및 시간 (15)	개관일수 (8)	연간 250일 이상	8		
			연간 250일 미만	0		
		개관시간 (7)	주간 40시간 이상	7		-주간 20시간 미만은 지원대상 제외
			주간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4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25)	독서·문화프로그램 실시 횟수 (10)	연49회 이상	10		-주기적 독서 문화프로그램의 총 실시횟수(프로그램별 실시횟수 합계) * 강좌명, 프로그램명 기재
			연25회~48회	8		
			연13회~24회	6		
			연1회~12회	4		
			미실시	0		
		독서·문화프로그램 행사 수 (5)	연간 5회 이상	5		2015년 추진한 책축제, 도서나눔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 *행사명 기재
			연간 1~4회	3		
			미실시	0		
		독서·문화프로그램 연간 총 참여인원 수 (10)	500명 이상	10		-2015년 독서·문화프로그램 총 참여인원수 -프로그램 관련 자료, 참여자 명단 등 확인
			300명~ 500명 미만	5		
			300명 미만	0		
	만족도 조사(5)	이용자 만족도 조사 (5)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5		설문 조사지 등 확인
			이용자 만족도조사 미실시	0		
장서관리 (20)	연간 장서 증가량 (8)	장서 증가량 (8)	연 400권 이상	8		지난 1년간(2015) 증가한 장서수
			연 300권 ~ 400권 미만	6		
			연 200권 ~ 300권 미만	4		
			연 100권 ~ 200권 미만	2		
			연 100권 미만	0		
	장서수 (12)	장서량 (8)	4,000권 이상	8		-2015년 12월말 기준 총 보유 장서수 -1,000권 미만은 지원대상 제외
			3,000권 ~ 4,000권 미만	6		
			2,000권 ~ 3,000권 미만	4		
			1,000권 ~ 2,000권 미만	2		
		연속간행물 (4)	5종 이상	4		-2015년 구독한 정기간행물 종수 -정기간행물명 확인
			1 ~ 4종	2		
			없음	0		
시설 (10)	공간 적정규모 (4)	공간면적 (4)	99㎡ 이상	4		-현관,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면적만 해당 -33㎡미만은 지원대상 제외
			66㎡ ~ 99㎡ 미만	3		
			33㎡ ~ 66㎡ 미만	2		
	전산 기기	도서관리프로그램 사용 여부(3)	도서관리프로그램 사용	3		도서관리를 위한 별도의 체계화된 프로그램 사용여부(KOLASYS-NET 등)
			도서관리프로그램 미사용	0		

	(6)	이용자용 컴퓨터 보유 대수(검색용) (3)	2대 이상	3		
			1대	2		
			없음	0		
인력자원 (30)	인력 및 전문성 (15)	전담인력 (10)	2명 이상	10		-상근인력(관장 포함) -도서관 직무 전담하여 책임근무하는 전일근무자 *복지관, 아동센터 등 다른업무도 함께 하는 경우 전담인력 아님
			1명	5		
			없음	0		
		전담인력의 전문성(5)	사서자격증 소지자(1명 이상)	5		
			사서자격증 미소지자	0		
	자원봉사자 (8)	상시 자원봉사자 (8)	15명 이상	8		-도서관 운영 정규인력 아닌 지원인력으로 작은도서관에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수행하는 인원수 -자원봉사자 명부 등 확인
			10 ~ 15명 미만	6		
			5 ~ 10명 미만	4		
			1 ~ 5명 미만	2		
			없음	0		
	전문교육 참여 (7)	교육 참여 횟수 (7)	연간 2회 이상	7		-2015년 1년간 도서관 운영 관련 교육 (행복도우미 워크숍 등 포함) 참여 횟수 -수료증, 참여확인서, 참여명단 등 확인
			연간 1회	4		
			없 음	0		
홍보·교류협력 (40)	온라인 홍보 (10)	홈페이지,인터넷카페, 블로그, SNS 등 운영(10)	운영	10		-개설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운영하지 않음'에 해당 -운영시 주소 등 기재
			운영하지 않음	0		
	도서관 교류협력 (10)	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여부 (10)	참여	10		-각급 도서관과의 협력 (공공,학교,작은도서관 등) -도서관협의회 참여 등
			미참여	0		
	지역사회 문화·교육 교류협력 (20)	운영실적 (10)	3회 이상	10		2015년에 문화 및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민·관에서 시행하는 책축제 참여, 학교, 유치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활동 포함)
			1 ~ 2회	6		
			없음	0		
		동아리 개수 (10)	3개 이상	10		동아리회원명부, 동아리활동 관련자료 등 확인
			1 ~ 2개	5		
			없음	0		
추가 (10)	우수 운영 (10)	노인 및 장애인 편의 시설 유무(3)	편의 시설 있음	3		독서확대기, 장애인 열람책상 등
			편의 시설 없음	0		
		도서관 알리미 활동 자료 (7)	5회 이상	7		2015년 1년간 언론매체,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재 회수 및 소식지 발간 횟수 등
			1~4회	3		
			없음	0		
총 점				210		

자치구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작은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관계자 : 소속 성명 (인)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 성명 (인)

평가대상 도서관 관리자(운영자) : 직책 성명 (인)

[붙임 2]

지원 제외 작은도서관 기준

- 작은도서관의 법적 기준 미달인 경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별표1]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시 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특정 종교서적이 전체 서적의 30% 이상인 경우
- 주 5일 미만 개방하는 도서관 (주5일 이상 개방해야 함)
- 1일 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개방일에는 1일 4시간 이상 개방해야 함)
- 간판(안내판)이 없거나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작은도서관
- 운영주체가 기업인 작은도서관
- 영리를 목적으로 유료회원제 등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 자치구에서 부실운영이라고 판단한 경우